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6662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101,695,580원, 지방교육세 20,339,110원, 가산세 28,149,320원, 합계 150,18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0. [redacted]시 B, C 지상 철골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창고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 8. 14.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D조합 등은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9카단910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9. 12. 19.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9. 12.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 및 위 가처분결정에 따른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20. 5.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60억 원에 매도하여 2020. 8.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E는 F 주식회사에 2020. 8.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20.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등록면허세 101,695,580원, 지방교육세 20,339,110원, 가산세 28,149,320원, 합계 150,184,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F 주식회사는 2021. 4.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1. 8. 4. 원고에 대한 가산세 28,149,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환급가산금 355,140원을 더한 28,504,450원에서 지방소득세 7,408,000원을 충당한 나머지 21,096,46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직권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호 단서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던 중 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등기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고,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이 정한 부동산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에 대하여 세율 1천분의 8의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는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 등기의 종류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율을 규정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명확하게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에 관하여 가처분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보존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 참조). 따라서 사용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사실상 사용이 가능하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단서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미완성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E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20. 8. 28.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1. 4. 22.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1천분의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반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세액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에서 정한 1천분의 20의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즉 지방세법은 취득시기 도래 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한 경우 취득세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다.

4)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호,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등은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상 부동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산에 해당한다. 한편, 가처분등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미등기건물은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5. 19.자 2009마406 결정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등기부상 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조 및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지하 1층 지상 4층의 창고시설로서 구조와 각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등기 명의자인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24조 제1호에 따라 그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text{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text{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times \frac{\text{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text{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③ 제10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7.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라.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및 가등기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1-26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제2항제7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끝.